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18 발의연월일: 2025. 2. 10.

발 의 자:복기왕·문진석·최기상

채현일 • 이연희 • 정준호

김태선 • 박용갑 • 염태영

노종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범죄자에 대해 일반사면을 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절차를 정하 고 있지 않음. 이에, 대통령은 현행 계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상신 을 받아 제한 없는 특별사면이 가능한바, 대통령 개인의 우호 집단 등 을 위해 특별사면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이 내란, 외란, 반란의 죄에 대하여 특별사면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단체 조직 등의 중대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단서 신설 등).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동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사면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한 자
- 2.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를 범한 자
- 3.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를 범한 자
- 4.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 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를 범한 자.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자

-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
-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를 범한 자.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 9.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범한 자
-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사면 등의 제한)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면·감형을 할 수 없다.
 -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편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자
 -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를 범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복권의 제한) (생 략)	제6조(복권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동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사
	면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도 이
	<u>와 같다.</u>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u><단</u>	<u>다만,</u>
<u>서 신설></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명하려면 국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u> <신 설></u>	1.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한 자
<u> </u>	2.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
_ 시 서 >	용)의 죄를 범한 자3. 「형법」 제164조(현주건조
<u> <신 설></u>	<u>3. 영법」 제104조(연구진조</u> 물 등 방화)제2항의 죄를 범
	<u> </u>
 <신 설>	<u>- ⁷¹</u> 4.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
<u> </u>	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
	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
	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u><신</u>설>

- 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 의 죄를 범한 자. 다만, 제262 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 우에 한정한다.
-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자
-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

 력범죄를 범한 자
-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제58조의 죄를 범한 자.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 9.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

 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죄

	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u> 처벌되는 죄를 범한 자</u>
<u><신 설></u>	제9조의2(사면 등의 제한)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면·감형을 할 수 없다 <u>.</u>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편제2장 외환의 죄를
	<u>범한 자</u>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
	의 죄를 범한 자